

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

[일부개정 2006.1.12 행정자치부령 제317호]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부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1.15>

제2조 (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)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부세(이하 “교부세”라 한다)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전년도 8월 31일까지 제출하되, 자료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1990.12.31, 2000.1.14, 2003.12.31>

제2조의2 (종합부동산세 교부액의 산정 기준) ①영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“2004년도분 재산세” 및 “2004년도분 종합토지세” 부과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, “당해 연도 재산세” 부과액은 정기분(7월, 9월)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다음 연도 결산액에 의하여 “당해 연도 재산세” 부과액을 재산정한 후 다음 연도 종합부동산세 교부시에 이를 정산한다. ②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잔액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에 의한다. [본조신설 2005.12.1]

제2조의3 (종합부동산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)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

산세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한다)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, 시·군·자치구별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·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종합부동산세 교부액 산정자료의 착오 등으로 교부액이 잘못 산정되어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연도의 다음 연도 교부액 산정시에 잘못 산정된 분을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③시장·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시·군·자치구의 교부액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·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산정시에 가감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장·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05.12.1]

제3조 (보통교부세의 교부) 각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자치단체”라 한다)에 교부

하는 보통교부세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(이하 “재정부족액”이라 한다)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되,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조정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$$\text{○조정율} = \frac{\text{보통교부세의 총액}}{\text{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}}$$

[전문개정 1990.12.31]

제4조 (단위비용)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비용은 별표 1의2에 의한다. <개정 1990.12.31, 2005.12.1>

②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공식은 별표 1의3에 의한다. <신설 2003.12.31, 2005.12.1>

제4조의2 (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산정방식) <개정 2002.12.30, 2006.1.12>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02.12.30, 2006.1.12> [본조신설 1991.12.31]

제5조 (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) ①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은 별표 1의2에 의한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

곱한 후 별표 2에 의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행한다. <개정 2003.12.31, 2005.1.15, 2005.12.1>

②다음의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. <개정 1993.12.31, 1995.12.30, 1997.12.31, 2000.1.14, 2000.12.30, 2003.12.31, 2005.1.15, 2006.1.12>

1. 특별시·광역시·도 :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는 금액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
2. 삭제 <2005.1.15>
3. 광역시·도 :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8조의3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·도지사가 시·군에 배분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시·도세징수교부금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
4. 시 : 「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분리산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(일반행정비를 제외한다)에 다음 각목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 - 가. 기간만료후 제1차연도 : 100분의 9
 - 나. 기간만료후 제2차연도 : 100분

의 7
 다. 기간만료후 제3차연도 : 100분의 5
 라. 기간만료후 제4차연도 : 100분의 3
 마. 기간만료후 제5차연도 : 100분의 1

5. 「공직선거법」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련 경비

6.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2의2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
 [전문개정 1990.12.31]

제5조의2 (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)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6.1.12>

1. 목적세수입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
2. 지방세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
3. 시·군의 경우 광역시장·도지사로부터 배분받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·도세징수교부금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
4. 세외수입중 사용료·수수료·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
5. 세외수입중 사용료·수수료·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의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
6.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수입액 및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

에 해당하는 금액

②제1항의 정산분의 과다·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. <신설 2006.1.12>
 [전문개정 2005.1.15]

제5조의3 (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) ①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·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별 산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 <개정 2000.12.30, 2005.1.15>

③삭제 <2000.12.30>
 [본조신설 2000.1.14]

제6조 (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)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사업의 필요성·투자효과·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그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1.15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재원계획 기타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 (특별교부세 교부기준)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는 특별

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그 교부기준등은 별표 4와 같다.
 [전문개정 1997.12.31]

제7조 (특별교부세의 집행) ①특별교부세는 교부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. 다만, 연도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.

②해당 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의 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용도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1.15>

제7조의2 삭제 <2005.1.15>

제7조의3 (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 (개정 2006.1.12)) ①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적수요의 대상사업은 별표 5와 같다.

②영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경상적수요는 불특정 자치단체를 교부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요와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특정목적 사업을 교부대상으로 하는 특정수요로 구분하고, 그 대상사업은 별표 6과 같다.
 [본조신설 2005.1.15]

제7조의4 (본권교부세의 교부 (개정 2006.1.12)) ①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의 산정공식은 별표 7과 같다.

②자치단체별 교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06.1.12>

[본조신설 2005.1.15]

제8조 (교부조건의 확인등)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자치단체가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0.1.14>

②삭제 <1990.12.31>

제9조 (단수계산) 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이상 1,00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,000원으로 한다.

부칙 <제481호, 1988.12.31>
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3호, 1989.12.30>
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7호, 1990.12.31>
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3호, 1991.12.31>
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

한다.

부칙 <제574호, 1992.12.9>

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3호, 1993.12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1호, 1994.2.2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4호, 1994.12.31>

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0호, 1995.12.30>

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9호, 1996.12.31>

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9호, 1997.12.31>

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호, 1998.12.31>

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호, 2000.1.1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17호, 2000.12.30>

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5호, 2001.12.31>

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7호, 2002.12.30>

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4호, 2003.12.31>

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4호, 2005.1.1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5조제1항,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4호,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7조의3, 제7조의4, 별표 1, 별표 1의2, 별표 2, 별표 3, 별표 3의2, 별표 5 내지 별표 8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05호, 2005.12.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7호, 2006.1.12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③(기준재정수입액 보정 특례)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영비율을 2006년도에는 100분의 60, 2007년도에는 100분의 70, 2008년도부터는 100분의 80으로 한다.